
「 」
[2010. 3.19] [22075 , 2010. 3.15,]
() 02 - 2023 - 7368

1 () 「 」
. < 2007.9.28 >

1 2() 「 」 (" ") 3 1 " "
(膝島)
[2007.9.28]

2 () 8 4 (" ")
1 . < 2004.12.30, 2007.9.28 >

3 () 2 .

4 () ,
가
. < 2008.2.29, 2010.3.15 >

3 2 .
. < 2008.2.29, 2010.3.15 >

5 () , (" ")
가 7
1 .

6 () 1 ,
. < 2008.2.29, 2010.3.15 >

7 () ,
< 2008.2.29, 2010.3.15 >

8 ()

9 () 9 2 5 "

1.

가.

2.

3.

10 () 9 3

1. 18 2

2.

3.

4.

15

11 () 10 1 3 " 가 가

1. 1

가.

2.

12 (가) 10 2 " "
< [2007.9.28](#) >

10 5 2 " " . .<

[2007.9.28](#)>

12 2() 11 1 2 " "

1 .

1. 가가

2. 가 .

[[2003.3.12](#)]

13 () 12 1 (" "

") . . ,

1 .

1.

2.

3.

12 1 가

1 .< [2008.2.29](#),

[2010.3.15](#)>

1. 12 2 4 가

2.

14 () 12 3 4 " "

.

1. ,

2.

3. . .

15 () 14 3 「 」

, 가 , , ,

15 1 .< [2007.9.28](#)>

14 3 3 가

1 .

14 4 1 , .

1 가 , ,

1 .

16 1

16 1

가

16 () 16 4

1. . .
- 2.
3. 16 2
- 4.
- 5.
- 6.

- 1.
- 2.
- 3.
- 4.

17 () 21 2 (")

18 () 22 1 1

.< [2008.2.29,](#)

[2010.3.15>](#)

22 2

1 가

()

1. 13 4

2

(가)

2. 가

가 가

19 () 27 1 " "

. < [2007.9.28](#) >

1. , 9 2

2. , 12 3

3. 1

가. 16 1

.

.

.

4. 1

가.

.

.

.

5.

6. 2 5

20 () 30 1 5 " "

1 .

1. 13 6

2. 22 1 2

3. 31 1

21 () 31 3

.

.

(

) . < [2007.9.28](#) >

31 3

.

.

. < [2007.9.28](#) >

1. : 11 1 , 13 1
2

2. : 18 , 24 1

3. : 15 1 , 16 1
4

4. : 1 3
30 1

2 1 2 , 30 2
1 2 3

, 30 3 1

2 1 2 2 3 .<

[2007.9.28>](#)

22 () 35

.< [2008.2.29, 2010.3.15>](#)

1. 29 2

2. 30 2

23 (.) 49 1

. . . .

.

, ("

") 1 10

.< [2008.2.29, 2010.3.15>](#)

3 .

.< [2008.2.29, 2010.3.15>](#)

< 22075 ,2010. 3.15>

1 () 2010 3 19 .< >

2 () <131>

<132>

4 2 . 4 , 6 , 7 , 13 2 , 18 2 , 22 ,

23 2 3 . 5 " 가 " " " .

6 " 가 " " " .
23 4 " 가 " " " .
<133> <187>

[별표 1] <개정 2007.9.28>

장기이식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의 기준(제17조관련)

I. 시설 및 장비기준

1. 공통기준

다음 각목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각막만을 이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수술실 : 심전도모니터, 혈압모니터 및 산소포화도측정기
- 나. 회복실 : 인공호흡기 및 감시장비
- 다. 중환자실 : 인공호흡기 및 감시장비
- 라. 임상병리검사시설
- 마. 진단방사선검사시설
- 바. 핵의학검사시설
- 사. 해부병리검사시설

2. 장기별 기준

- 가. 신장 및 췌장 : 투석실 및 혈액투석기
- 나. 간장 : 인공심폐기, 고속주입기 및 자가수혈장치
- 다. 심장 및 폐 : 인공심폐기
- 라. 골수 : 무균입원실
- 마. 각막 : 안구처리·보관시설, 경면현미경, 임상병리검사시설 및 수술실
- 바. 체도 : 무균분리실
- 사. 소장 : 내시경, 내시경적 생검시설, 고속주입기 및 자가수혈장치

II. 인력기준

1. 공통기준

- 가.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방사선과, 재활의학과, 핵의학과, 정신과, 소아과 및 내과(감염 전문 및 호흡기 전문)의 전문의를 각 1인 이상 두어야 한다.
- 나.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막만을 이식하는 경우에는 진단검사의학과 및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각 1인만 둘 수 있고, 골수만을 이식하는 경우에는 진단검사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내과(감염 전문) 및 소아과의 전문의 각 1인만을 둘 수 있다.
- 다. 장기등의 적출·이식을 위한 상담·연락업무 등을 담당하는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각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다만, 각막만을 이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장기별 기준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하여 장기별로 해당전문과목의 전문의를 1인 이상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외과·흉부외과·비뇨기과 및 내과(혈액종양 전문에 한정한다) 전문의는 국내 또는 국외의 장기이식의료기관에서 장기이식 훈련 과정을 6월 이상 수료한 자이어야 한다.

가. 신장 : 외과 또는 비뇨기과, 내과(신장 전문)

나. 췌장 및 췌도 : 외과, 내과(내분비 전문)

다. 간장 : 외과, 내과(소화기 전문)

라. 심장 : 흉부외과, 내과(순환기 전문)

마. 폐 : 흉부외과, 내과(호흡기 전문)

바. 골수 : 내과(혈액종양 전문)

사. 각막 : 안과

아. 소장 : 외과, 내과(소화기 전문)

Ⅲ. 시설·장비 및 인력의 공동이용

2개 이상의 장기등을 이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I. 시설 및 장기기준 제2호의 규정과 II. 인력기준 제2호의 규정중 중복되는 시설·장비 및 인력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식대상자의 선정기준(제18조제1항관련)

I. 일반기준

1. 장기등기증자와 이식대상자의 혈액형이 동일하거나 장기등기증자의 혈액형이 이식대상자에게 수혈이 가능한 혈액형이어야 한다. 다만, 골수 등 수혈가능여부와 관계없이 의학적으로 이식수술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장기등기증자가 살아있는 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목의 순위에 따라 이식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가. 1순위 : 당해 뇌사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중 장기등이식대기자로 등록된 자
 - 나. 2순위 : 당해 뇌사자를 관리하고 있는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에 등록된 신장 이식대상자 1인
 - 다. 3순위 : 당해 뇌사자를 발굴한 장기이식의료기관(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제외한다)에 등록된 신장이식대상자 1명
 - 라. 4순위 : 다음 항목의 권역구분에 따라 장기등기증자와 동일권역안에 있는 장기등이식대기자. 다만, Ⅱ. 장기별 기준에서 권역구분없이 이식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 요건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Ⅱ. 장기별 기준 제3호의 경우에는 권역구분없이 전국의 장기등이식대기자 중에서 이식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1) 제1권역 :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강원도 및 제주특별자치도
 - (2) 제2권역 : 대전광역시·광주광역시·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 및 전라남도
 - (3) 제3권역 : 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북도 및 경상남도
 - 마. 5순위 : 전국의 장기등이식대기자
3. Ⅱ. 장기별 기준에 따라 이식대상자를 선정한 결과 동일 순위에 속하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각목의 순위에 따라 이식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가. 1순위 : 과거에 장기등을 기증한 사실이 있는 자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중에 뇌사자장기기증을 한 사실이 있는 자
 - 나. 2순위 : 나이가 어린 자
 - 다. 3순위 : 장기등이식대기자로 등록한 기간이 오래된 자

4. 간장·심장·소장 또는 폐의 이식대상자로 이미 선정된 자가 신장 또는 췌장을 동시에 이식받을 수 있는 대상자로 되는 경우에 있어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는 신장 또는 췌장의 이식대상자(이하 이 호에서 "다장기이식대상자"라 한다)로 우선 선정하되, 이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Ⅱ. 장기별 기준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순위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장기이식대상자는 Ⅱ. 장기별 기준 제1호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신장 또는 췌장만을 이식받고자 하는 장기등이식대기자 중에서 Ⅱ. 장기별 기준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 선정하여야 한다.

가. 장기등기증자와 이식대상자의 사람백혈구항원 교차검사(Human Leukocyte Antigen Cross Match)의 결과가 음성일 것

나. 장기등기증자와 혈액형이 동일할 것

5. 간장의 이식대상자로 이미 선정된 자가 심장·소장 또는 폐를 동시에 이식받을 수 있는 대상자로 되거나, 심장·소장 또는 폐의 이식대상자로 이미 선정된 자가 간장을 동시에 이식받을 수 있는 대상자로 되는 경우에 있어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심장·소장이나 폐 또는 간장의 이식대상자로 우선 선정하되, 이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가. Ⅱ. 장기별 기준 제2호가목의 요건에 적합할 것

나. 동시에 이식받아야 하는 심장·소장이나 폐 또는 간장을 기준으로 측정된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학적 응급도(이하 "응급도"라 한다)가 심장·소장이나 폐 또는 간장중 1개만을 이식받고자 하는 장기등이식대기자보다 높거나 같을 것

6. 제4호와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제3호의 순위에 따른다.

Ⅱ. 장기별 기준

1. 신장 및 췌장

가. 장기등기증자와 장기등이식대기자의 사람백혈구항원(Human Leukocyte Antigen, HLA) 검사(A, B, DR항원 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결과 모든 항원의 조직형이 각각 일치하는 경우에는 I. 일반기준 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권역구분없이 이식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기등기증자와 이식대상자의 사람백혈구항원 교차검사 결과는 음성이어야 한다.

나. 가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등이식대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항목의 순위에 따라 이식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장기등이식대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I. 일반기준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1) 1순위 : 장기등기증자와 혈액형이 동일한 자

(2) 2순위 : 장기등기증자의 혈액형을 기준으로 그 혈액의 수혈이 가능한 혈액형(이하 "수혈가능혈액형"이라 한다)을 가진 자

다. 장기등기증자와 장기등이식대기자의 사람백혈구항원 검사 결과 모든 항원의 조직형이 각각 일치하는 장기등이식대기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항목의 기준에 따라 이식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기등기증자와 이식대상자의 사람백혈구항원 교차검사 결과는 음성이어야 한다.

(1) 장기등기증자와 혈액형이 동일한 장기등이식대기자 중에서 이식대상자를 선정하되, 혈액형이 동일한 장기등이식대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혈가능혈액형을 가진 장기등이식대기자 중에서 이식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2) (1)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등이식대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항목에 부여된 점수의 합계가 가장 높은 자를 선정하되, 이에 해당하는 장기등이식대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I. 일반기준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가) 사람백혈구항원 검사 결과

(나) 장기등이식대기자의 나이

(다) 장기등이식대기자의 대기시간

(라) 과거에 사람백혈구항원 교차검사 결과 2회 이상 양성반응이 나타났는지 여부

(마) 과거에 신장을 이식받았는지의 여부

(바) 과거에 장기등을 기증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중 뇌사자장기기증을 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라. 장기등기증자와 동일권역안에 신장 및 췌장을 동시에 이식받아야 하는 장기등이식대기자가 다음 각항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장 또는 췌장만을 이식받고자 하는 자에 우선하여 이식대상자로 선정하되, 이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I. 일반기준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신장 및 췌장을 동시에 이식받아야 하는 장기등이식대기자는 제1호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신장 또는 췌장만을 이식받고자 하는 장기등이식대기자 중에서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자를 이식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1) 다목(2)에 의한 점수의 합계가 신장의 이식대기자 중에서 상위 2

5%이내에 속할 것

(2) 장기등기증자와 혈액형이 동일할 것

(3) 다목 본문 후단의 요건에 적합할 것

마. 장기등기증자가 11세 이하인 경우에는 11세 이하의 장기등이식대기자 중에서 가목 내지 라목의 기준에 따라 이식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2. 간 장

가. 장기등기증자 체중의 0.5배부터 2.0배까지에 해당하는 장기등이식대기자 중에서 이식대상자를 우선 선정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장기등이식대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응급도가 가장 높은 등급에 속하는 자 중에서 응급도가 높은 순위로 이식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 응급도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항목의 순위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1) 1순위 : 장기등기증자와 동일 권역안에 있는 장기등이식대기자

(2) 2순위 : 장기등기증자와 다른 권역에 있는 장기등이식대기자

다. 나목의 규정에 따라 이식대상자가 선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일권역안에 있는 장기등이식대기자 중에서 응급도가 높은 순위로 선정하여야 한다.

라. 나목 또는 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등이식대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항목에 부여된 점수의 합계가 가장 높은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I. 일반기준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1) 장기등이식대기자의 나이

(2) 장기등이식대기자의 대기시간

(3) 과거에 장기등을 기증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중 뇌사자장기기증을 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4) 장기등기증자와 혈액형이 동일한지의 여부

(5) 장기등기증자와 장기등이식대기자의 지리적 근접도

마. 이식대상자를 선정한 결과 장기등기증자의 간의 크기와 이식대상자의 간의 크기를 고려할 때 간장을 분할하여 이식할 수 있는 경우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이식대상자의 이식수술을 담당하는 장기이식의료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분할 이식대상자를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3. 심장 및 폐

가. 심장 또는 심장 및 폐의 이식대상자(이하 이 호에서 "심·폐 동시이식대상자"라 한다)는 응급도가 가장 높은 등급에 속하는 장기등이식대기자

중에서 우선 선정하되, 응급도가 가장 높은 등급에 속하는 장기등이식대기자 중에서 선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응급도가 제2순위로 높은 등급에 속하는 장기등이식대기자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나. 가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등이식대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또는 가목의 규정에 따라 이식대상자가 선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심장의 이식대상자는 다음의 (1) 내지 (9)의 항목에 부여된 점수의 합계가 가장 높은 자를 선정하고, 심·폐 동시이식대상자는 다음의 (1) 내지 (11)의 항목에 부여된 점수의 합계가 가장 높은 자를 선정한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I. 일반기준 제3호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 (1) 장기등이식대기자의 응급도
- (2) 장기등이식대기자의 대기시간
- (3) 장기등기증자와 혈액형이 동일한지의 여부
- (4) 장기등이식대기자의 감염성질환 유무
- (5) 과거에 장기등을 기증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중 뇌사자장기기증을 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 (6) 장기등기증자와 장기등이식대기자의 지리적 근접도
- (7) 장기등이식대기자의 나이
- (8) 장기등기증자와 장기등이식대기자의 나이 차이
- (9) 장기등기증자와 장기등이식대기자의 체중 차이
- (10) 장기등기증자와 장기등이식대기자의 흉부 X-선상 폐의 크기의 차이
- (11) 장기등이식대기자의 원인질환의 유형

다. 폐의 이식대상자는 장기등이식대기자 중에서 나목의 (1) 내지 (11)의 항목에 부여된 점수의 합계가 가장 높은 자를 선정하되, 이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I. 일반기준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라. 심·폐 동시이식대상자가 심장 또는 폐중 1개만을 이식받고자 하는 장기등이식대기자(이하 이 호에서 "심·폐 단독이식대상자"라 한다)보다 우선하여 이식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하여는 다음 각항목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 (1) 심·폐 동시이식대상자의 심장의 응급도가 가장 높은 등급 또는 제2순위로 높은 등급에 속하고, 심·폐 동시이식대상자의 심장의 응급도가 심·폐 단독이식대상자보다 높을 것

(2) 심·폐 동시이식대상자와 심·폐 단독이식대상자의 심장의 응급도가 가장 높은 등급 또는 제2순위로 높은 등급에 속하지 아니하고, 심·폐 동시이식대상자의 나목(1) 내지 (8)의 항목에 부여된 점수의 합계가 심·폐 단독이식대상자 보다 높을 것. 이 경우 심·폐 동시이식대상자의 나목(1)의 점수는 응급도가 높은 장기를 기준으로 한다.

4. 골 수

가. 장기등기증자와 장기등이식대기자의 사람백혈구항원 검사 결과 모든 항원의 조직형이 각각 일치하는 자를 이식대상자로 선정하되, 이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I. 일반기준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나. 장기등기증자와 장기등이식대기자의 사람백혈구항원 검사 결과 모든 항원의 조직형이 각각 일치하는 장기등이식대기자가 없는 경우에는 조직형이 일치하는 항목이 다수인 장기등이식대기자 순위로 이식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기등이식대기자의 이식수술 담당의사 및 장기등기증자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이식대상자는 그 질환 상태를 고려하여 이식수술이 가능한 자이어야 한다.

5. 웨도

가. 웨장 이식대상자가 없는 경우에 웨도이식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 장기등기증자와 장기등이식대기자의 사람백혈구항원 교차검사 결과가 음성이어야 한다.

다. 장기등이식대기자의 대기시간이 긴 순서에 따라 이식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라. 한번 이식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최대 3회까지 이식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6. 소장

가. 장기등이식대기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응급도가 가장 높은 등급에 속하는 자 중에서 응급도가 높은 순위로 이식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 응급도에 해당하는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항목의 순위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1) 1순위 : 장기등기증자와 동일 권역 안에 있는 장기등이식대기자

2) 2순위 : 장기등기증자와 다른 권역에 있는 장기등이식대기자

나. 가목에 따라 이식대상자가 선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일권역 안에 있는 장기등이식대기자 중에서 응급도가 높은 순위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장기등이식대기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항목에 부여된 점수의 합계가 가장 높은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I. 일반기준 제3호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 1) 장기등이식대기자의 나이
- 2) 장기등이식대기자의 대기시간
- 3) 과거에 장기등을 기증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뇌사자장기 기증을 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 4) 장기등기증자와 혈액형이 동일한지의 여부
- 5) 장기등기증자와 장기등이식대기자의 지리적 근접도

[별표 3] <개정 2010.3.1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제3항관련)

I. 일반기준

과태료처분권자는 당해 위반행위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해당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처분하는 때에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II.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해당법조문	과태료금액 (만원)
1.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기등기증자, 장기등이식대기자 또는 장기등기증희망자의 등록결과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때	법 제48조제1항 제1호	250
2. 법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기등 기증에 대한 동의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아니한 때	법 제48조제1항 제2호	200
3. 법 제22조제1항 후단 또는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식대상자의 선정사실을 장기등기증자, 이식대상자와 그 가족·유족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때	법 제48조제1항 제3호	250
4.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를 이관하지 아니한 때	법 제48조제1항 제4호	200
5. 법 제2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법 제48조제2항 제1호	150
6. 법 제3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등록기관·뇌사판정기관 또는 이식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당해 명칭을 사용한 때	법 제48조제2항 제2호	100
7. 법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법 제48조제3항 제1호	50
8.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 또는 통보를 하지 아니한 때	법 제48조제3항 제2호	50